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31 선고 2021나6552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31 선고 2021나6552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1가단502497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전우석

변론 종결 2022. 7. 6.

판결 선고 2022. 8. 31.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1가단502497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3,081,94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한 선하증권을 교부해 주었고,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한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도 피고이므로, 이 사건 크레인 수입에 따른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피고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크레인 수입으로 인하여 원고가 납부한 관세 103,081,94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계약서는 '3. 물건대금 지급방법'에서 "원고가 물건을 인도장소에 인도(설치)한 후 D의 물건수령증서 또는 리스물건 인수확인서를 피고가 접수하고, 물건의 수량, 품질, 규격, 성능 등이 완전하다고 피고가 인정하면 물건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6. 기타조건'에서 "상기 '3. 물건대금 지급방법'에도 불구하고 리스물건대금은 D 및 원고의 요청시 원고에게 선지급하기로 하며 이에 대하여 D 및 원고는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5. 27. 원고에게 물건대금 5억 5,000만 원을 선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크레인은 2011. 7.경에야 우리나라에 도착하였고, 원고가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서 수입신고를 마친 사실, ③ 이

사건 계약서 중 매매조건 제3조는 "매매계약에 따른 물건의 제작 및 인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대경비(운송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일체)는 원칙적으로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원고는 D와의 합의를 통해 그 일부를 D의 부담으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D은 피고에 대하여 물건 취득가액에의 전가 또는 D이 부담한 금액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제8조는 "D이 피고에게 물건수령증을 발급하고, 피고가 물건대금의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한 때에 물건의 소유권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되고, 이를 피고, 원고, D은 각각 확인한다. 물건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되기 전에 물건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사고로 인한 책임은 전부 원고의 부담과 책임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④ 원고는 수입절차를 모두 마친 이후 이 사건 크레인을 D에게 인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크레인의 실제 수입자는 리스물건 공급자인 원고이고, 이 사건 크레인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되는 시기는 이 사건 크레인이 리스이용자인 D에게 인도된 이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크레인 수입에 따른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피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창열

판사김수경

판사김우현